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br>결<br>사<br>항 |
| 의 결<br>연 월 일 | 2020. . .<br>(제 회) |                  |

신 항 만 건 설 축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br>(해양수산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 제 처 심 사 전

## 1. 의결주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에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 나.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체에 대한 계약 방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5. 지원사업의 효과
6. 지원사업 대상 지역
7.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8. 분야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9. 그 밖에 설계도서 등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출된 내용

만으로 지원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계획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 대상 지역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계획 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로 정한 사항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 중 제5항 각 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해양수산부 장관과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원계획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변경(제5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해당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분야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6. 지원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7. 그 밖에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보 고시가 필요한 사항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우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21조의4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대기준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u></li> <li><u>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u></li> <li><u>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u></li> <li><u>4.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u></li> <li><u>5. 지원사업의 효과</u></li> <li><u>6. 지원사업 대상 지역</u></li> <li><u>7.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u></li> <li><u>8. 분야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u></li> <li><u>9. 그 밖에 설계도서 등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u></li> </ol> |
| <p><u>&lt;신 설&gt;</u></p> | <p><u>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신항만 예정지역 지원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해양수</u></p>                                                                                                                                                                                                                                                                                                                                          |

<신 설>

산부 장관은 제출된 내용만으로  
지원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  
기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  
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계획 시행능력의 적정성

④ 법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  
다.

<신 설>

⑤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다만,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원사업  
의 규모 또는 면적을 100분의 1  
0 이내로 변경하거나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2.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3. 지원사업 대상 지역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계획  
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로 정  
한 사항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협의, 의견수렴 및 심  
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 중 제5  
항 각 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  
다.

⑦ 해양수산부장관과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  
의3제4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  
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예  
정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예정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신 설>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  
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원계획의 개요 및 주요 사  
업내용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  
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계획의 승인  
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원계획의 사업시행자가 승  
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  
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신 설>

<신 설>

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변경(제5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 해당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분야별·연차별 사업추진계획

6. 지원사업 시행자 명칭 및 주소

7. 그 밖에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보 고시가 필요한 사항

제34조의4(우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21조의4에 따른

우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대기  
준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항만개발과 |              |
|-------|--------------|
| 연 락 처 | 044-200-5933 |